pwc

新知
中国税务/商务专业服务

강소성 국경 간 조세정책 적용 서비스 출시 —— 국경 간 조세 확실성 제고를 위한 새 패러다임

2026.10

Issue 13

개요

2026 년 8 월 14 일, 국가세무총국 강소성 세무국 판공실은《국가세무총국 강소성 세무국의 국경 간 거래 국제조세 정책 적용 서비스 업무방법(시행)》[1](소세판발[2026]24 호, 이하 "《업무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 성급 세무부문이 구조화, 맞춤형 서비스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납세인은 해당 메커니즘을 통해 국경 간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특정 복잡한 국경 간 거래에 국제조세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세무기관이 발급한 서면 지도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법》과 함께 《국가세무총국 강소성 세무국의 국제조세 준수 계획 (2026-2028 년)》[2] (소세판발[2026]25 호, 이하 "《준수계획》")이 동시에 발표되었는데, 후자는 강소성 국제조세 관리의 3 년 전략 프레임워크를 확립했습니다. 두 문건은 유기적인 정책 조합을 구성합니다 : 《준수계획》은 총체적인 이념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밝히고, 《업무방법》은 납세인이 특정 국경 간 세무 사항에서 조세 확실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서비스 도구를 제공합니다.

전국 차원에서 말하자면, 중국은 다년간 조세 사전결정 제도를 꾸준히 모색해왔습니다. 국가세무총국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2025 년 초 기준, 최소 12 개의 성급 세무기관이 대기업조세사전결정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제도 문서를 발표했습니다(일부 성급 제도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음). 2025 년 12 월, 강소성 자체적으로 《국가세무총국 강소성 세무국의 대기업조세사전결정 업무관리방법》(소세판발[2025]36 호)을 이미 발표했는데, 이는 대기업의 일반적인 복잡한 세무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번 새로운 《업무방법》은 국경 간 및 국제조세 분야에 대해 맞춤형 보충 설명을 추가했는데, 그전까지는 일반 사전결정 메커니즘이 해당 분야를 모두 포괄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상세 내용

법적 성격 및 위상

《업무방법》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그 법적 성격에 대한 명확성에 있습니다. 문건상 제 3 조 규정에 따르면, 국경 간 조세정책 적용 서비스는 "맞춤형 납세인 서비스 조치"로서 "납세인의 권리의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규정은 강소성 일찍이 발표한 대기업 사전결정 방법 및 광동성, 상해시 등 기타 지역에서 채택한 유사 제도 문서의 기준과 일치합니다. 해당 규정은 다음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 세무기관이 발급한 서면 의견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부의(行政复议, 이의제기)를 받지 않으며, 행정부의 또는 행정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것을 신청할 수도 없음.

- 해당 서비스는 납세인이 독립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책임사항을 면제하지 않음(제 17 조).
- 해당 의견은 신청 시 관련된 특정 납세인과 특정 세무사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며, 기타 납세인 또는 기타 미신청 사항에 직접 적용해서는 안됨(제 16 조).

비록 해당 성격은 메커니즘의 법적 효력을 제한했지만, 동시에 제도 시행의 문턱을 낮추어 세무기관이 시범 시행의 방식으로 향후 입법을 위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적용 범위

적용 사항

《업무방법》 제 4 조는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7 가지 유형의 국경 간 국제조세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비거주자 납세인의 조세조약 혜택 적용 판정.
- 비거주자기업 지분 양도 시 특수세무처리 적용 판정.
- 비거주자기업 자산 간접 양도의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 판정.
- 비거주자기업의 중국 경내원천소득 유형 판정.
- 특수관계 용역 거래의 수익성 판정.
- 피지배외국기업("CFC")이 이익을 배당하지 않거나 배당을 줄이게 된 "합리적 경영상 필요" 판정.
- 기타 국경 간 거래 또는 계획의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 판정.

상술한 유형은 《준수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제시한 리스크 분야와 매우 부합하는데, 동 계획에서는 세수우대혜택 남용, 간접양도, 대외지급을 통한 세원 잠식, 그리고 피지배외국기업의 유보이익을 연도 감독관리의 핵심 관심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외 사항

《업무방법》 제 5 조는 서비스 범위에서 제외되는 5 가지 유형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명확한 국경 간 업무 수행 계획이 없거나 단기간 내 발생할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현행 조세 정책에 명확한 규정이 있고 관련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분석 및 판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 특수관계거래의 가격 책정 타당성과 관련된 사항(PwC 주: 해당 사항은 APA 를 통해서 처리).
- 관련 세금 금액이 1000 만 위안 미만인 사항.
- 국경 간 거래 국제조세정책 적용 서비스를 적용하지 않는 기타 사항.

인민폐 1000 만 위안이라는 기준액은 해당 제도가 주로 기업의 중대하고 위험이 큰 국경 간 거래를 위해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특수관계자 거래의 가격 책정 합리성 문제는 이미 별도의 사전가격승인제도(APA) 메커니즘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이번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기업 사전결정 제도와의 연계

《업무방법》 제 6 조 규정에 따르면,《국가세무총국 강소성 세무국의 대기업 조세사전결정 업무관리방법》 적용 범위에 부합하는 납세인이 국경 간 세무 사항에 관한 사전결정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업무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사전결정의 절차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로써 보다 명확한 제도적 경계가 형성됩니다. 즉, 일반 사전결정 체계는 대기업의 각종 세무 사항을 관장하고,《업무방법》은 비거주자 납세인과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비대기업 납세인의 전문적인 국경 간 복잡한 세무 사항을 지원합니다.

신청 및 접수 절차

《업무방법》은 주관(구급) 세무기관, 시급 세무기관 국제조세 부문 및 성급 세무기관 국제조세 부문이 구성하는 3 단계 관리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一）신청 제출(제 7 조)

신청인은 주관 세무기관에 신청을 제출합니다. 동일 사항이 여러 개의 주관 세무기관과 관련된 경우, 그 중 임의의 한 세무기관에 신청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二）형식 심사 및 신고(제 8 조)

주관 세무기관이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서류 구비 여부에 대해 형식 심사를 진행합니다.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3 영업일 이내 시급 세무기관 국제조세 관리부문에 신고해야 합니다.

（三）접수(제 9 조)

시급 세무기관 국제조세 관리부문이 신고를 받는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 신청이 접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하며, 결과를 주관 세무기관에 보고합니다. 주관 세무기관은 2 영업일 이내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고지합니다.

서면 의견 발급

주관 세무기관은 접수일로부터 60 영업일 이내(중단 기간 제외)에 정책 적용 의견을 발급하고, 《세무사항통지서》(별첨 3)을 통해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의견 발급 후 3 영업일 이내, 해당 의견의 사본을 성급 국제조세관리처에 신고하여 비안을 처리합니다(제 10 조).

후속 서비스 관리

신청인이 서면 의견을 받은 후 다음 경우 중 하나가 발생하면 30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접수를 처리한 세무기관에 고지해야 합니다(제 13 조):

- 신청한 사항을 더이상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 신청한 사항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한 경우.

- 신청한 사항이 실행 완료된 경우.

해당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36 개월 이내《업무방법》에 따라 제출한 새로운 신청을 더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자료 보관 및 기밀유지

세무기관과 신청인 양 당사자는 모두 서비스와 관련된 자료를 적절히 보관해야 하며, 서비스 과정에서 입수된 정보에 대해 상호 기밀유지 의무를 집니다(제 15 조, 제 18 조).

이전 불가,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서면 의견은 신청 사항 관련 특정 납세인 및 특정 세무사항에만 적용되며, 기타 납세인 또는 기타 미신청 세무사항에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본 서비스 적용을 신청하더라도 신청인이 법에 의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제 16-17 조).

관련 제도와 비교

다음 표와 같이《업무방법》과 강소성 대기업 사전결정 제도의 주요 특징을 비교했습니다:

항목	국가세무총국 강소성 세무국 국경 간 거래 국제조세정책 적용 서비스 업무방법(시행)(2026)	국가세무총국 강소성 세무국 대기업 조세사전결정 업무관리방법(2025)
제도 문건 번호	소세판발〔2026〕24 호	소세판발〔2025〕36 호
적용 납세인	강소성 관할 구역 내 모든 거주자·비거주자 납세인	대기업(천호집단 기업그룹, 성·시급 상장기업, 중점세원기업)
적용 범위	국경 간/국제조세 사항에 한함	일반적인 복잡한 세무 사항(재편, 지분양도, 특수관계 거래, 공정건설 등)
최저 금액	인민폐 1000 만위안	미규정

의견 처리 기한	60 영업일	미규정
실효·집행 기한	6 개월	36 개월
법적 성격	맞춤형 서비스 조치, 권리의무에 실질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행정 행위가 아님	맞춤형 서비스 조치, 권리의무에 실질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행정 행위가 아님

상기 비교를 통해《업무방법》의 여러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주체의 범위가 보다 넓음: 지정 대기업에만 적용하는 기존 사전결정과 달리,《업무방법》은 강소성 관할 구역 내 모든 납세인, 즉 중소기업 및 중국 경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하지 않은 비거주자기업에 대해서 모두 적용됨.
- 국경 간 전문성 정립: 7 가지 열거 사항(조세조약 혜택, 간접양도, 피지배외국기업 등)은 세무기관에 국내법과 국제조세조약을 함께 분석할 능력을 요구함. 만약 세무기관과 기업이 이 분야에서 이견을 보이면 기업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업무방법》이 바로 그 제도적 공백을 채워줌.
- 집행 기한이 보다 엄격함:《업무방법》제 14 조 제(4)항에 규정된 6 개월의 집행 기한은 강소성 대기업 사전결정 방법에서 규정한 36 개월보다 명확히 짧은데, 이는《업무방법》이 서비스의 중점을 최근에 실행한 거래(제 5 조 제 1 항, 최근 실행 계획이 없는 사항 제외)에 두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임.

시사점 및 의미

(一) 중국 조세 확실성 체계의 하나의 공백을 메움

《업무방법》은 중국 조세 확실성 제도 체계의 발전 과정에서 하나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기존 사전가격승인제도는 다국적 기업 이전가격에 확실성을 제공하고, 대기업 사전결정 체계는 일반적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지만, 국경 간 세무 사항(조세조약 혜택 자격, 간접양도의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 평가, 피지배외국기업의 "합리적 경영상 필요" 인정 등)에 대해서는 세수징수관리 관점에서 거래 발생 전 서면 지침을 얻을 메커니즘이 그동안 없었습니다.《업무방법》이 강소성 납세인을 위해 이 공백을 메운 것입니다.

(二) 국제 조세 확실성 선진 방향과 접목

본 서비스는 경외 다른 조세 관할구역의 사전결정 제도와 이념적으로 유사합니다. 예컨대 영국은 2026 년 7 월 투자 규모 최소 10 억 파운드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대기업 조세 재결"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영국 제도와 마찬가지로《업무방법》도 신청인에게 상세 거래 정보 제출, 집행 기한 설정, 상황 변화 시 실효 조건 약정을 요구합니다. 다만 핵심 차이는《업무방법》상 서면 의견은 구속력 없는 서비스 조치로 명확히 규정된 반면, 영국의 재결은 세무기관을 일방적으로 구속한다는 점입니다.

(三) 국경 간 투자자에 대한 실제 가치

강소성에 투자하거나 경영을 하는 다국적 기업과 비거주자 투자자에게《업무방법》은 복잡한 국경 간 구조를 실행하기 전에 조세 확실성을 얻기 위해 실질적 수단을 제공합니다. 7 가지 적용 사항은 국제조세 실무에서 비교적 흔하면서도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국경 간 세무 문제를 아우릅니다.

- 조세조약 혜택 확정(예: 배당금, 이자, 특허권사용료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을 위한 "수익적 소유자" 자격).
- 간접양도의 평가(국가세무총국 2015 년 제 7 호 공고에 따라, 중국 자산 관련 경외 지분 양도에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이 있는지 여부).
- 피지배외국기업(CFC)의 판정(피지배외국기업의 경외 유보이익에 대한 "합리적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
- 소득의 성격 구분(적용 조세조약에 따라 관련 대외 지급액을 사업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으로 판정해야 하는지 여부).

거래 실행 전 서면 의견을 취득함으로써 납세인은 거래 후 납세조정 및 관련 처벌을 당할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四) 한계 및 리스크 안내

다국적 기업은 해당 제도의 한계에 유의해야 합니다.

- 구속력 없음: 《업무방법》에 따른 서면 의견은 세무기관을 강제로 구속하지 않으며, 신청 기업도 행정부의나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없음. 따라서 실제 집행이 신청 자료의 기재 내용과 다를 경우, 납세인은 세무국의 서면 의견을 후속 납세조정에 맞서는 근거로 삼을 수 없음.
- 성급 범위로 한정: 서면 의견은 강소성 행정구역 내에서만 효력이 있음. 성을 넘는 주체와 관련된 사항은 다른 성에서 별도로 다르게 처리될 수 있음.
-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적 틀의 부재: 현행 《세수징수관리법》에는 사전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각 성의 관련 제도는 모두 지방 규범성 문서 수준에 있고, 《업무방법》도 마찬가지임.
- 실효 발동 조건이 엄격함: 6 개월의 실제 집행 기한에, 적용 범위가 넓은(제출 자료에 오류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를 포함함) 실효 약정까지 더해져, 납세인은 신청 준비 시 각별히 신중해야 하고 신청 사항이 제때 이행되도록 해야 함.

주의사항

《업무방법》은 강소성 세무국이 국경 간 거래의 조세 확실성을 꾸준히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룬 매우 뜻깊은 시도입니다. 납세인이 국경 간 거래 실행 전에 서면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가 명확하고 시간 제약이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강소성 세무국은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고 세무 서비스 체계의 실제 공백을 정확히 메우는 관리 수단을 만들어 냈습니다.

비록 세무기관의 서면 의견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업무방법》은 의심할 여지 없는 실무적 가치를 지닙니다. 세무기관과 기업 간에 국경 간 거래의 사전 공식 소통 채널을 열고, 세무기관 답변에 절차적 규범을 마련하며, 납세인의 선의 준수를 입증하는 서면 기록을 남깁니다. 강소성에 투자하거나 경영을 하는 다국적 기업과 비거주자 투자자에게 《업무방법》은 상당히 가치 있는 조세 리스크 관리 도구이며, 깊이 있는 분석과 탐구가 필요합니다.

주석

1. 《국가세무총국 강소성 세무국의 국경 간 거래 국제조세정책 적용 서비스 업무방법(시행)》(소세판발〔2026〕24 호)

   https://jiangsu.chinatax.gov.cn/art/2026/8/14/art_22437_2182.html

2. 《국가세무총국 강소성 세무국의 국제조세 준수 계획(2026-2028 년)》(소세판발〔2026〕25 호)

   https://jiangsu.chinatax.gov.cn/art/2026/8/14/art_22437_2181.html

CONTACT LIST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김도현 Partner** (86) (21) 2323-3350, dh.kim@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지영 Director (86) (10) 8553-1114, jiyoung.j.yu@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원택 (86) (10) 6533-6416, won-taek.w.kim@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Partne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최영기 (86) (21) 2323-8174, younggi.y.choi@cn.pwc.com

(회계감사 & Tax) 윤태규 (86) (21) 2323-8164, julian.t.yoon@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참고로, 저희의 지난호 Newsflash(영문/중문/국문)는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n.com/en/services/tax/publications/taxlibrary-chinatax-kr.html

新知
中国税务/商务专业服务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的资料于 2026 年 10 月 14 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咸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 2026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

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